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79 발의연월일: 2025. 2. 14.

발 의 자: 강대식 • 고동진 • 조지연

이인선 · 김상훈 · 강명구

김선교 • 백종헌 • 유용원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1년에 4번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운전자가 시장 안으로 돌진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치매와 같이 수시 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 가진 운전자의 개인정보가 신속하게 통보되어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이러한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수시 적성검사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기준일을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함으로써 수시 적성검사의 효용성을 제 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중 "경찰청장에게"를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
정보의 통보) ① 제88조제1항	정보의 통보) ①
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	
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	
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	
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	
정보를 <u>경찰청장에게</u> 통보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
야 한다.	내에 경찰청장에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